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159-000005-10

2017

검역업무지침



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7 검역업무지침
질병관리본부

목 차

Part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 1

1. 목적 ····· 3
2. 검역대상 감염병 ····· 3
3.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선정) 및 해제 ····· 4

Part Ⅱ. 검역업무 / 7

1. 검역의 개념 ····· 9
2. 검역절차 ····· 9
 가. 공항검역 ····· 9
 나. 항만검역 ····· 11
 다. 육로검역 ····· 17
3. 검역조사 ····· 19
 가. 공항검역 ····· 19
 나. 항만검역 ····· 21
 다. 육로검역 ····· 22
 라. 공통사항 ····· 23
 마.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 29
4. 검역조치 ····· 31
 가.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치 ····· 31
 나. 승무원 · 승객에 대한 조치 ····· 39
 다. 검역증 발급 ····· 45
5. 검역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46

Part Ⅲ. 감염병 예방업무 / 47

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49
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 ····· 58
3.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 67

Part Ⅳ. 행정사항 / 69

1. 증명서 관련 업무 ····· 71
2. 벌칙 조항 ····· 75
3. 기타 사항 ····· 78

Part Ⅴ. 붙 임 / 79

Part Ⅵ. 참 고 / 131

감염병 관리지침을 별도 운영 시, 해당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검역법」 이하 “법”이라 한다.

「검역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검역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하 “[별지 서식]”이라 한다.

part

I

검역업무 기본방침

1 목적

2 검역대상 감염병

3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선정) 및 해제

Part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01 목적(법 제1조)

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콜레라 등 전통적 감염병 재출현, 해외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국가 간 감염병의 확산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 선박, 열차·자동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02 검역대상 감염병(법 제2조)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나. '가'항 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6호(2015.5.1)】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삭제〉
3. 폴리오
4.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03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선정) 및 해제 (법 제5조, 제5조의2,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가 오염지역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2)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나 오염인근지역 선정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2)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다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해제

질병관리본부장은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지정(선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선정)을 해제

* 질병관리본부장은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지정(선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며 국립검역소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을 지정(선정)하거나 해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항공사, 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 유관기관에 문서로 통보

라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지정·관리 및 해제기준

* 검역지원과-2041호('16. 7.19)

1) 오염지역의 지정

가)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아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6호)」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선포한 감염병' 중 치명률, 전염성 등에 대한 감염병 위기분석에 따라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분석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오염지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면적, 발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행정단위(주, 성 등)로 오염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오염인근지역의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지역의 국경과 인접하고 있어 검역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해제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part

II

검역업무

1 검역의 개념

2 검역절차

3 검역조사

4 검역조치

5 검역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Part Ⅱ 검역업무

01 검역의 개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02 검역절차

가 공항검역

1) 검역통보(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장은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항공사를 통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를 도착 30분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GD(General Declaration) 자료를 전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

2) 검역장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가) 항공기는 검역장소에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장소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1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3) 검역시각(법 제11조)

가) 항공기는 도착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검역소장은 해당 항공기의 장으로부터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받아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검역 전 탑승의 허가 등(법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항공기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 및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탑승할 수 없으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역 전 탑승의 허가

(1) 제출 서류

(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2부

(나) 기타 입증서류(업무 관련 입증서류)

다) '가)'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라) 검역 전 탑승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검역소장은 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 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 검역소장은「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1부에 [붙임 제1호 서식]에 따른「허가필」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검역소에 보관한다.

마) 검역 전 탑승을 허가 받은 자는 검역소장이 교부해 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를 허가기간 동안 휴대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요구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 검역소장은 검역 전 탑승 허가대상자 교부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는 연도(4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한다.

예) 허가번호 : 제2017-00001호

(2)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교부대장 : [붙임 제2호 서식]

사) 검역소장은 검역 전 탑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만검역

1) 검역통보(법 제9조)

선장은 해당 선박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할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를 도착 24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트의 경우에는 검역통보 없이 입항할 수 있으나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역장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선박은 노란색 기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 검역장소 :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1

다)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이 어려운 경우

(3) 선박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6) 선박 내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1)~(7)까지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검역소장의 지시 없이 선박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 또는 도착하였을 경우 검역소장은 검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장소로 회항 또는 이동할 것을 해당 선장에게 명령·경고하여야 한다.

마) 검역조사(전자 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 포함) 결과 선박 내 감염병원균이 검출된 해당 선박이 외국으로 출항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입항하였을 때에는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하거나 소독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바)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은 검역구역 안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구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

3) 검역시각(법 제11조)

가)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예정시각을 통보하여야 하고, 검역소장은 해당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일몰 후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역조사 시간】
검역조사는 부두 접안검역을 실시하되, 선박화물 접안 2시간 이내 검역조사 완료

* 다만, 긴급 하역의 필요성 등을 검역소장이 판단 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조사시간 자체결정

4) 검역 전 승선의 허가 등(법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 및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승선할 수 없으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역 전 승선의 허가

(1) 신청대상

(가) 「도선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도선을 요청받은 도선사(도선 수습생 포함)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

(2) 제출서류

(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 2부

(나) 도선사(도선수습생 포함)의 경우 : 면허증 사본(도선수습생의 경우 도선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증서 사본)

(다)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 업무 관련 입증서류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라) 검역 전 승선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검역소장은 허가목적, 허가요청기간(시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 전 승선을 허가할 수 있다.

(1) 검역소장은 신청자에게 1회 승선이 가능하도록 허가기간(시간)을 정하여 검역 전 승선을 허가한다. 다만, 도선사(도선수습생 포함)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도선사(도선수습생 포함)는 도선사운영협의회를 통해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선사(도선수습생 포함) 또는 도선사운영협의회는 변동사항(퇴사, 면허취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검역소장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1부에 [붙임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필」을 날인한 후 검역 전 승선 허가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검역소에 보관한다. 다만, 도선사(도선수습생 포함)의 경우에는 「허가필」을 날인한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검역 전 승선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검역소장이 교부한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를 허가기간(시간) 동안 휴대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요구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1년의 범위내에서 검역 전 승선을 허가받은 도선사(도선수습생 포함)의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허가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바) 검역소장은 검역 전 승선 허가대상자의 교부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는 연도(4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한다.

예) 허가번호 : 제2017-00001호

(2)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교부대장 : [붙임 제2호 서식] 참조

사) 검역소장은 검역 전 승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전자 검역(법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가) 전자 검역의 신청

(1)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입항하고자 하는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해당 선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검역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전자 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전자 검역을 신청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선장은 검역소장이 전자 검역 신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전자 검역 심사 및 통보

(1) 검역소장은 전자 검역의 신청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오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검역소장은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 검역 심사 불합격 대상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가)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직접 들어오는 선박

(나)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직접 들어오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라)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마)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사)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⑶ 검역소장은 전자검역 신청 후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1)항'의 통지를 취소하고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⑷ 검역소장으로부터 '(1)'항, '(2)항', '(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장은 관할세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 전자 검역 심사 합격 대상 선박의 서류 접수 및 검역증 발급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선박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항해일지,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를 검역소장에게 즉시 제출 또는 제시한 때가 해당 선장이 검역증을 발급받는 시점이다.

(2) 선박의 장은 도착 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나) 제시서류: 항해일지,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등

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전자 검역 심사 합격 대상 선박으로부터 전산으로 접수된 해당 선박의 검역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한다.

다 육로검역

1) 검역통보(법 제9조)

가)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열차·자동차의 장은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2) 검역장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 장소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검역시각(법 제11조)

가) 열차·자동차(도보 포함)의 경우 도착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나) 외국으로 나가는 열차·자동차(도보 포함)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당해 열차·자동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각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각 이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03 검역조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공항검역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제출서류를 검역소장에게 도착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항공기의 장이 제출)

* 항공사에서 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가능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무원 승객 명부*(항공기의 장이 제출)

* 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가능

(3)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해당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항공기의 장이 일괄제출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이 직접 제출)

* 오염지역을 방문 후 오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내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건강상태질문서 직접 제출

(4)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나) 항공기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제시서류를 도착 후 즉시 검역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항공기의 장이 제시)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다)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에게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2) 게이트검역

단계		검역 방법	대상	비고
입국장(入國場) 게이트 검역	1단계	발열감시 +자진신고	검역감염병 비오염지역	신고의무자 자진신고 (검역법 제29조의3)
	2단계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인체 간 감염성이 낮은 검역감염병
주기장(駐機場) 게이트 검역	3단계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인체 간 감염성이 높은 검역감염병
	4단계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개별 체온측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공중보건위기상황 감염병 등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검역감염병 및 신·변종 감염병

* 게이트 검역단계별 검역방법은 각 검역소별 검역관 인력 및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검역소장이 탄력적으로 운용가능

나 항만검역

1)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가) 선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제출서류를 도착한 후 즉시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신고서」(선장이 제출)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선장이 제출)

【승무원 및 승객명부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방법】

- (승 객) 국내거주지 주소·전화번호, 여행사명 또는 여행사 주소·전화번호, 해운대리점(여객선사)명 또는 해운대리점(여객선사) 주소·전화번호
- (승무원) 해운대리점(여객선사)명 또는 해운대리점(여객선사) 주소·전화번호

(3)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선장이 일괄제출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이 직접제출). 다만, 선의(船醫)가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오염지역을 방문 후 오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내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은 건강상태질문서 직접 제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나) 선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제시서류를 도착 후 즉시 검역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항해일지(선장이 제시)

(2)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다)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에게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다 육로검역

1) 검역조사 관련 제출서류 등

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출)

다)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상태질문서(열차·자동차의 장 또는 승무원 및 승객이 제출)

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도보출입자가 제출)

마)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2) 검역조사 관련 제시서류

가)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

나)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라 공통사항

1) 발열감시

가) 대상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 및 승객

나) 방법

(1) 열감지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이상) 색출

* 1차온도 측정(열감지카메라 등)에서 이상으로 감지된 승객 또는 승무원은 고막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 측정 실시
* 건강상태질문서 증상표시자 중 필요한 경우 고막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시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국내 주소 등을 성실히 기재토록 요구

(2) 1차, 2차 고열로 판명된 자 중 검역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공중보건의 또는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단, 공중보건의 또는 역학조사관이 상주하지 않는 검역소의 경우 시·도 또는 위기대응총괄과 역학조사관과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인계 가능

* 인계 후 역학조사는 [붙임 제4호]유증상자 조사표에 기반

2) 검체채취 및 검사

가)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1) 기간 : 연중

* 콜레라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5~9월에 검체채취 강화

(2) 대상 :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검역소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채취대상 운송수단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검역관이 현장에서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체 채취여부 결정

(가)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최종 출발한 운송수단으로서 콜레라 감시기간 이내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나) 최근 3개월 입국 운송수단 내 감염병원균 검출현황

(다) 최근 3개월 입국 운송수단 내 수인성 감염병 환자 등 발생현황

(라) 운송수단 내 전반적인 위생상태

(마) 해외 수인성 감염병 발생 동향

(바)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3) 채취 건수 : 화장실 개수 등을 고려하여 1~3건 채취

(4) 채취 장소 : 검역관이 위생상태 확인 후 검체채취가 필요한 곳
(예 : 변기오수, 조리실 등)

(5) 검사항목 등

(가)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나) 해당검역소에서는 검체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세균확인 동정을 위해 냉장(또는 실온) 보관하여 필요시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다) 검사 의뢰를 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통보

나) 승객 및 승무원

(1) 대상

(가) 건강상태질문서에 설사 등의 증상 표시를 한 승객·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나) 설사 등의 증상을 신고한 승객·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다) 37.5℃ 이상의 발열자 중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증세별 발열자 판단 기준온도는 개별 감염병 대응지침 참조

(라)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써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검체 채취 및 방법

(가) 설사 증상자 : 직장도말 또는 채변

(나) 37.5℃ 이상의 발열자 등 : 인후(상기도)도말 또는 객담, 필요시 채혈, 채뇨

* [붙임 제4호 서식]에 따른 「유증상자 조사표」에 따라 조사, 검체 채취 시에는 [붙임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징구

(다) 세균검사 대상 검체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사 대상 검체는 냉장(또는 실온) 보관후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를 실시하고 의뢰한 검역소에 그 결과를 통보

(3) 검사항목 등

(가) 세균검사 :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 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나) 바이러스 검사 :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

* 바이러스 검사는 입국자의 방문국가 등을 고려하여 의심되는 검역감염병의 종류를 선택 후 실시

3)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가)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제7호 서식]에 따른 「유해검역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용 목적으로 플라스티네이션(Plastination) 처리과정을 거친 인체(사체)의 경우는 검역대상에서 제외(검역지원과-1344호 '12.9.12.)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방부처리 증빙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단, 화장한 유골, 사망 후 100년 이상 경과한 시체나 유골은 다음의 신청서류로 간소화 할 수 있다.
  - 화장한 유골 : 화장증명서
  - 100년 이상 경과한 신체나 유골 : 사망시기를 확일할 수 있는 서류

* (1)~(2)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서류 제출, 그 외 언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를 영사관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원본을 확인한 경우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검역소장은 유해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제8호 서식]에 따른 「유해검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망자가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준한 검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마)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를 검사하기 위해 해부를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4) 검역조사의 생략(법 제6조,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나) 검역조사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해당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선박의 경우 : 입항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생략신청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준용한 검역조사 생략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즉시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검역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붙임 제22호 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검역조사 생략 심사 합격 운송수단의 다음 도착지가 국내인 경우 검역조사를 생략한 검역소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도착지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검역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역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관련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 군용운송수단 중 검역법 제7조에 따라 검역조사를 생략한 경우 검역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1) 특수 운송수단의 검역조사(법 제6조)

가)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 등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운송수단과 접촉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나) 운송수단의 장은 그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장소로 갈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인근의 검역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나)'항의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그 장소로 검역관을 파견하여 당해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용 운송수단의 검역조사(법 제7조)

검역소장은 군용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다는 사실

나)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3) 피난 항공기의 검역조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가) 항공기를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는 항공기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검역 조치 지시를 받은 항공기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피난 선박의 검역조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가) 선박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는 선박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나포,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나)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선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검역 조치 지시를 받은 선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불법조업 선박의 검역조사(법 제6조, 제9조,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검역대상 : 불법조업 선박(나포선박) 및 접촉선박

나) 검역시각 : 입항 즉시 * 해양경비안전서 및 어업관리단 등에서 입항 통보 즉시

다) 검역장소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또는 불법조업 선박 정박지(불개항정박지)

* 발생상황, 안전상의 문제,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실시

04 검역조치(법 제15조)

가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치

1) 식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조사

가)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의 소독, 폐기 및 이동의 금지조치를 취한다.

나) 선박에 적재된 물건 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식품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보관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라)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2) 전자 검역 대상 선박 보건위생관리

가) 전자 검역으로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감염병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역조사에 준한 보건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경유한 선박으로서 검역감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2) 적재화물의 성상으로 보아 감염병 매개체 유입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예) 곡류, 사료, 목재, 어패류 등의 화물이 적재된 선박

(3)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발급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그 유효기간이 2주 이내로 남은 선박

(4)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나) 위생관리 점검 결과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및 번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생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선장에게 소독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전자 검역 선박의 위생관리 점검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른다.

3) 운송수단에서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가) 콜레라균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에 즉시 보고

* 단, 콜레라균(O1 또는 O139) 병원체가 분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 고위험 병원체 분리신고

(2) 조치사항

(가) 입국자 전원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즉시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검역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나) 즉시 검역정보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을 한 후 소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15호 서식]에 따른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수단이 소독을 시행하지 않고 출항한 경우 차기 입항 시에 [별지15호 서식]에 따른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타 제1군감염병 병원균(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및 제1군 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에 즉시 보고
단, 제1군 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 발생보고는 제외

(2) 조치사항 : 즉시 검역정보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법 등을 지도 할 수 있다.

4) 소독 조치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가) 소독 명령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및 번식상태가 확인된 경우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2)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검역소장은 소독명령할 때에는 하역일정, 출항일자 등을 고려하여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다.

(나) 운송수단의 장에게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그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다.

나) 소독이행

'가)' 항의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라 소독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소독약품

(1) 사용약품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를 득한 살충·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 준수

(가) 소독결과 확인시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나) 소독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유무 및 약품사용기준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에서 확인

* [참고5번]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예시 참고

라)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1)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실시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붙임 제23호 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단, 지속적으로 소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4)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확인사항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준수여부 확인
- 소독업무 실적과 약품사용량 등 수급내용 확인
- 기타 검역관련 소독업무대행에 따른 업무지도 등

* 쥐잡이 또는 벌레잡이 등의 소독결과보고서에 의한 소독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쥐 또는 벌레가 발견되는 등 재소독이 필요한 경우 다시 소독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독시행명령을 받은 항공기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업무대행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3) 운송수단 및 수출·입 화물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 보유

* 검역소장은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운송수단 입항 대수 및 소독건수(건/년) 등)과 관련 법령(「검역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HCN·MB 등)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붙임23호 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약제(HCN·MB 등)의 보유기준」을 소독대행업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1) 수입폐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결과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또는 매개 우려가 있어 소독을 필요로 할 경우, 동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쥐잡이소독(HCN 훈증소독) 또는 분무소독(살충 또는 살균소독) 실시

(2) 수입고철화물

(가) 수입고철 중 각종 병원체나 위생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검역소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것

① 수입고철소독기준 및 소독방법 등의 적정이행 여부

② 각종 병원체나 위생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수입고철의 소독은 선박 내 또는 부두(하역장, 야적장 포함)에서 소독처리 실시여부

③ 동 화물의 작업장 주변에 대한 위생적인 청결상태를 유지여부

* 고철소독을 이행한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처리이행 사항

(나) 고철수입자 및 소독업무대행자 준수사항

① 수입되는 고철은 하역 시 야적장으로 이송 후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고철하역장 및 고철야적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③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와 소독계약을 체결 시 계약내용에 고철소독과 흙 및 쓰레기소독을 구분계약토록 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한다.

* 수입고철을 하역장에서 야적장으로 이송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처리이행 사항

④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소독작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⑤ 소독업무대행자는 매회 [붙임 제18호 서식]에 따른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및 [붙임 제19호 서식]에 따른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를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

⑥ 고철수입자는 관할 검역소장의 소독업무 지도·감독 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입고철 소독기준

① 살충소독기준

원제 1L당 살포기준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 (1,000톤 기준)
약품명	원제량	살포량	살포면적	살포면적
살충제	1L	40cc/㎡	2,500㎡	16,500㎡

㉮ 고철이 1,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철의 적재방법에 따라 하역장소 및 야적장 등의 면적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하역장소 및 야적장 면적이 소독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독면적에 대한 기준은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수입 컨테이너화물(고철) 소독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소독기준 및 소독방법에 따른다.

② 고철톤수(량)에 대한 살포면적(㎡) 산출기준

㉮ 고철소독면적은 500톤(3,000㎡)단위로 산출하되, 500톤 단위기준 이하 또는 이상의 잔여 톤수에 대한 고철소독 면적산출은 250톤을 기준으로 절상·절하하여 500톤 단위로 살포면적을 산출한다.

㉯ 고철 하역 시 소독면적은 1,000톤당 6,000㎡로 한다.

㉰ 고철야적장 이송 후 하역장소(부두) 소독면적은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3,000㎡로 한다.

㉱ 고철야적장 이송 후 야적장 및 그 주변 소독면적은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7,500㎡로 한다.

㉲ 1,000톤 미만의 고철소독의 경우 1,000톤을 기준으로 소독실시

예시)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톤수	살포면적(㎡)	원제량(ℓ)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9.0
10,000	70,500 (60,000+3,000+7,500)	28.2
30,000	190,500 (180,000+3,000+7,500)	76.2

5) 이동금지 등의 조치(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

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하고, 오염 운송수단과 그 주변에는 통제기간, 통제사유 등이 표시된 [붙임 제6호 서식]에 따른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검역관 등 관계자 이외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운송수단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검역감염병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6) 회항 등의 지시(법 제15조, 제23조, 시행규칙 제18조)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회항·이동 지시서」를 교부하여,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승무원 · 승객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제17조)

1)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대한 조치

(1) 해당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병상 이송

(2) 동 사실을 해당 시·도에 통보 및 질병관리본부(검역감염병 종류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관련 부서)에 보고

나)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치

(1) 해당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여 시설(자가)격리 및 모니터링

(2) 동 사실을 해당 시·도에 통보 및 질병관리본부(검역감염병 종류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관련 부서)에 보고

2)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가) 집단설사(2인 이상)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즉시 보고

(2) 조치사항

- 설사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유증상자조사표[붙임 제4호 서식]을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의원 입원안내 및 관할 시·도에 동 사실을 통보
- 설사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검역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검역소장은 검체채취 검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및 관할 시·도에 통보

나) 설사 증상자(1인)가 발생한 경우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직장도말 또는 채변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및 관할 시·도에 검역정보시스템으로 통보

단, 직장도말은 검역관의 교육을 받은 설사증상자가 직접 채취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직접 채취가 어려운 경우 검역관 또는 공중보건의 또는 역학조사관이 채취하도록 한다.

3)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가) 콜레라균(O1 또는 O139) 등 제1군감염병(A형 간염 제외)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에 즉시 보고

* 단, 콜레라균(O1 또는 O139) 병원체가 분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 고위험 병원체 분리신고

(2) 조치사항

- 1군감염병 환자가 단체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검역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제1군감염병 환자(1인)의 경우는 개별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검역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제1군감염병균(A형 간염 제외) :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 검역소장은 검사결과 탑승했던 승객·승무원 중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 즉시 검역정보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을 한 후 소독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15호 서식]에 따른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1군 감염병 및 제1군 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검역정보 시스템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 할 수 있다.

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등 검역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1)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위기대응총괄과)에 즉시 보고

(2) 조치사항

- 즉시 환자에 대한 유증상자조사표[붙임 제4호 서식]을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 등 격리시설로 입원조치 및 관할 시·도에 동 사실을 통보(검역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즉시 환자 및 접촉자(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발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검역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검역소장은 검체채취 검사결과를 관할 시·도에 문서로 통보

4)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가)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

나)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많이 발생하여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검역소 내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 [참고6] 임시격리실 설치·운영 기준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및 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격리조치 또는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라)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를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격리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의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바)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접촉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위기대응총괄과)에 즉시 보고

5)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에 대한 감시

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접촉자 포함)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감시 및 격리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 5일

(2) 페스트 : 6일

(3) 황　열 :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 10일

(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4일

(7)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 최대 잠복기

(8) (1) 내지 (7)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 최대잠복기 : 폴리오 및 에볼라바이러스병(21일)

라) 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위기대응총괄과)에 즉시 보고

ㅇ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명단 통보기준

- 검역소에서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감염병의심입국자추적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입국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자동 통보

구 분	명단 통보 기준	비 고
• 승무원·승객에서 콜레라균(O1 또는 O139) 등 제1군감염병 병원균(A형간염 제외)이 발견(확인)된 경우	• 제1군감염병 환자가 단체여행객(2인 이상)의 일원일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 제1군감염병 환자(1인)의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 단, 2인 미만의 설사 증상자 발생은 추적조사대상은 아니며 입국 후 증상발현 등 설사 증상자 관리를 위한 사실 통보
• 운송수단 내에서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발견(확인)된 경우	• 입국자 전원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 승무원·승객에서 2인 이상의 집단설사 증상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유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 승무원·승객으로서 개별 설사 증상자 중 검체채취(직장도말 또는 채변)한 경우	• 개별 검체채취(직장도말 또는 채변)한 사실 및 필요한 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	

6)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 감염병 환자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검역소장은 출국,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대상자가 발생하면 요청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에 즉시 보고한다.

다 검역증 발급

1) 검역증 발급(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

검역조사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검역증」을 발급한다. 단,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검역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건부 검역증 발급(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

검역조사결과 검역소독, 재검역 또는 재설문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명기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역소장은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건부 검역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 기타 재검역(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사환자의 재설문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경우
-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05 검역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법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가. 검역소장과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조사 생략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2) 검역통보
3) 운송수단별 신고서와 승무원 및 승객명부 제출
4) 전자검역의 신청 및 변경 통보
5) 전자검역의 심사 및 통보
6) 검역증 발급
7) 각종 증명서의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8)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
9)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에 따른 자료 · 정보의 제출

나.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가항 각호(6)호 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part

III

감염병 예방업무

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

3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Part

Ⅲ 감염병 예방업무

01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법 제29조)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또는 검역감염병 이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해당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가장 의심되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유증상자조사표[붙임 제4호 서식]를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 시기** : 검역구역 내 환자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 질병정보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신고 포함

2) **조사방법**

가) 검체채취

나) 유증상자조사표[붙임 제4호 서식]

3) **조치 및 보고사항** : '검역조사결과 조치 및 보고사항'에 준하여 실시

나 살충 · 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1)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선정

가) 검역소장은 방역사업 개시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관할 보건소장 및 공항만시설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이 어려운 공 · 항만(부두)주변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방역관리계획 수립시 전년도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결과를 참고한다.

2) 소독기간 : 4~10월(주 1회 이상)

* 다만, 검역소장은 지역별 기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소독방법 : 살균 및 살충소독

4) 실시요령

가) 검역구역 내 소독을 보건소, 항만(공항)공사, 항만(공항)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업무대행자 등이 실시할 경우에는 [붙임 제14호] 서식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 · 점검표」에 따라, 해당기관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였는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취약지역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 대상지역에 초미립자(ULV) 소독을 실시한다.

다)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방역약품 · 약제 선정 및 사용

가) 「의약외품 품목 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장 감염병예방용 살균 · 살충제 등 품목허가 및 심사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득한 살균 · 살충제 중 소독대상지역 및 대상해충에 맞는 살균 · 살충제를 사용한다.

나) 약제별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의 희석 · 배합을 배제함으로써 살충효과를 높이며, 구제대상 해충의 저항성 방지를 위해 성분별 순환교대식으로 사용토록 한다.

다) 방역약품의 선정 시 「환경호르몬추정물질」의 함유여부를 검토하여 「환경호르몬추정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감염병 보균자 색출검사

1) 질병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대상기관 선정 및 보건소 주관 시 정보공유

가) 대상기관 : 검역구역의 운송수단 대리점, 관련 여행사, 병원, 약국, 식품접객업소 등

나) 모니터링 기간

(1) 평시 : 월 1회 이상

(2) 비상방역 기간(5~9월) : 주 1회 이상

다) 신고대상

(1)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2) 급성열성질환 증상자(37.5℃ 이상 발열자)

(3) 급성설사(의사)환자(수인성 감염병 등) 또는 유증상자

라) 선정방법

(1) 검역소장은 환자 또는 유증상자의 신고 등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2)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제한다.

마) 질병모니터링 운영방법

(1)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모니터링제의 운영취지·환자발생에 따른 신고요령, 비상 연락망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상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2) 검역소장은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감염병 발생관련 정보를 수시 제공하며 필요시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요령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필요시 연1회 이상 모니터링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바) 모니터링 결과 조치 및 결과보고

- '검역조치 보고사항'에 준하여 실시

사)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신고 시 업무절차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신고 접수

↓

○ 질병관리본부에(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보고
  – 설사환자 및 1군 법정감염병 유증상자(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호흡기 바이러스 유증상자(검역지원과, 위기대응총괄과)

↓

○ 검역관/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

↓

○ 검체 채취 및 보건교육
○ 필요시 의료기관 방문 안내

↓

○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병원균 검출 결과 보고
  – 설사환자 및 1군 감염병 병원균 검출시(검역지원과, 감염병관리과)
  ·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시(검역지원과, 위기대응총괄과)
    * 검역조치 보고사항에 준하여 보고
○ 해당 시·도에 명단 및 검사결과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역학조사
  – 환자/접촉자 관리
  – 감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 치료/격리

라 어패류와 식품 관련 교육 · 홍보 및 가검물검사

1) 어패류와 식품 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교육 · 홍보

가) 기간 : 연중(분기 1회 이상)

나) 대상 업소 :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다) 내용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 · 홍보

2) 어패류와 식품 등에 대한 가검물검사

가) 시기 : 감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나) 검사항목 :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 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다) 검사결과 양성 시

(1) 즉시 해당 식품접객업소 등에 검사결과 통보하여 관련식품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확인

(2)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 · 군 · 구에 통보하여 필요한 방역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

마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

1)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가) 모기종별 분포 및 밀도 조사

(1) 조사기간 : 3.1 ~ 11.30

(2) 조사방법 : 유문등, BG 트랩 등 모기채집기를 이용한 주 1회 채집

(3) 조사지점

- 해외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소
-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4) 매개체 채집정보는 월 1회 검역지원과, 질병매개곤충과에 통보

나) 쥐 및 바퀴서식 여부 조사

(1) 쥐

(가) 조사기간 : 필요 시

(나) 조사방법

- 생포용 쥐덫을 활용하여 쥐를 채집
- 혈액 채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혈액 채취 후 병원체 (페스트 등) 검사

(2) 바퀴벌레

(가) 조사기간 : 4. 1 ~ 11. 30

(나) 조사방법

- fit-fall trap 및 끈끈이 트랩으로 월 1회 바퀴벌레 채집
- 미분류 건은 질병매개곤충과로 송부하여 결과 회신

(3) 조사지점

- 해외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소
- 식당 및 숙박시설 등 취약지역

다) 플라비바이러스 감염률 조사

(1) 대상 : 지카·치쿤구니야열·일본뇌염·웨스트나일·뎅기열·황열 바이러스

(2) 검사수행

-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는 플라비바이러스 자체검사
  - 플라비바이러스 검사 실시 후,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신경계바이러스과에 결과 보고, 관할 시·군·구에 검사결과 통보
  - 그 외 바이러스 관련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신경계바이러스과에 의뢰
- 이 외 검역소는 지역거점 검사센터로 검사의뢰

(주 1회 모기 종 분류 후, 즉시 바이러스 검사 냉장택배로 의뢰)

〈검역소별 검체 의뢰 지역거점 검사센터〉

지역거점 검사센터	인천공항	부산	여수
	검체의뢰⇑⇓Feedback	검체의뢰⇑⇓Feedback	검체의뢰⇑⇓Feedback
검 역 소	○ 인천검역소 ○ 동해검역소 ○ 제주검역소	○ 김해검역소 ○ 울산검역소 ○ 포항검역소 ○ 마산검역소 ○ 통영검역소	○ 목포검역소 ○ 군산검역소

2) 매개체 방제

가) 관할 보건소 등에 매개체 채집정보를 월1회 제공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매개체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검역소장은 검역소별 특수성을 감안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사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1) 조사대상

가) 콜레라 오염지역 등*에서 최종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 중 검역소장이 콜레라 감염병이 국내에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

* WHO나 CDC 등의 감염병 정보에 의한 콜레라 발생지역 포함

나) 콜레라 오염지역 또는 발생지역의 해역에서 평형수를 보충하고 입항하는 선박

2) 조사방법

가) 선내 평형수 관리일지 등 확인, 선원인터뷰 및 관능검사

나) 선박평형수를 탱크별 무작위로 채취하여 세균검사 실시

3) 검사결과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 조치사항

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수인성질환과, 감염병관리과) 즉시 보고

나) 선장 또는 선사·해운대리점 등에 즉시 병원균 검출결과 통보

다)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통보(정보공유)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하수 병원체 조사 및 온도 측정

가) 기간 : 4월~10월(주1회)

나) 대상 병원체 : 콜레라,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

다) 콜레라 검출 시,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조사원과 콜레라 발생현황에 대한 상시 정보공유

* 향후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의 '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후 통합예정

2)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 수행

가)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

(1) 기간 : 1~12월(월2회)

(2) 대상 병원체 : 콜레라,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

(3) 검사기관

(가) 사업총괄 : 국립여수검역소

(나) 수행기관 : 항만검역소 11개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

3) 관내 보건기관과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기술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예방

가) 지역별 감염병 발생추이 등에 대한 정보교류

나) 유사 시 공동방역대책 협의

다) 지역사회 방역사업 추진·평가

라)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조

마) 유관기관 업무체계 구축 등

4) 감염병예방 홍보강화

가) WHO, CDC 등을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확인 및 정보제공

나)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를 질병정보 모니터링 대상기관 등에 제공하여 해당지역 여행·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다)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확인된 사항(병원체 확인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라) 검역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축제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5)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

가) 검역소장은 해외여행객에게 해외발생 감염병 정보제공 등을 위해 검역구역내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1) 해외여행객에게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 제공

(2) 국가별 주요 감염병 현황 및 개인위생수칙 제공

(3) 해외여행건강관련 정보 등 제공

(4) 해외여행질병관련 홍보, 상담 및 교육 등

(5) 국제공인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6) 해외여행객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증진관련 프로그램 운영

0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법 제28조)

가 대상 : 황열, 콜레라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1)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증명서 발급번호 기입

- 증명서 발급번호 체계 : 고유코드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 번호 5자리
  - 고유코드 : 국립중앙의료원(NMC), 충남대학교병원(CNU), 분당서울대학교병원(SNU), 국립울산검역소(USQ), 국립부산검역소(PSQ) 등
  - 예시) NMC1700001('17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 접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증명서 번호)

나) 이름 :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

다) 여권번호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라) 날짜 : 일(숫자), 월(영어의 약어), 년(숫자)로 작성

마) 서명 : 여권과 동일한 신청인 자필 서명

바) 담당의료인의 직급과 서명 : 예방접종 담당 의료인의 이름을 영문 자필로 기입

사) 유효일

(1) 황 열(주사제) : 예방접종일자 10일 이후부터 평생

(예) 2017.10.10 접종한 경우 20.OCT.2017∽life of person vaccinated

(2) 콜레라(경구제)

(가) (6세 이상) 기초접종 2회, 접종간격 1-6주

- 1차 예방접종일자 일주일 이후부터 5주간 유효

(예) 2017.10.10에 1차 접종한 경우 2017.10.17.~2017.11.20. 유효

- 2차 예방접종일부터 2년간 유효

(예) 2017.10.17에 2차 접종한 경우 2017.10.17.~2019.10.16. 유효

* 이외 투약 및 의약품 관련 정보는「의약품 설명서」참조

3) 예방접종관련 주의사항

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피접종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의 예방접종 여부와 질병(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 등) 유무를 확인하고 [붙임 제10호 서식] 또는 [붙임 제11호 서식]의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나) 9개월 미만의 영아(황열), 2세 미만의 소아(콜레라) 또는 기타 질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붙임 제12호 서식]의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발급 시에는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다) 접종자는 예방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법, 접종용량, 주의사항 등 의약품 설명서를 숙지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예방접종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백신 개봉 등 예방접종을 위한 준비를 한다.

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1) 대상

가)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다)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라) 예방접종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증명서 재발급 요청 시

2) 발급기관 : 국립검역소(또는 예방접종 시행한 지정기관)

3) 접수 및 처리 절차 : 재발급 신청(접수) → 발급내역 확인 → 증명서 재발급

* (국립검역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내역을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및 제시서류

가) 제출서류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붙임 제13호 서식) 1부

(2)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의 경우 제외)

(3)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장(대리인 발급 시)

나) 제시서류

(1) 신분증(대리인)

(2) 여권 또는 여권사본(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5)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마 관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관인을 찍어야 한다.

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3조)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 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는 검역정보시스템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부」로 대신할 수 있다.

사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등(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

1)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따른다.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 기 발급된 증명서에 추가 투약사항을 기재할 시 수수료면제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 백신료와 접종비용

(1) 백신료는 실비로 하며 다음과 같다.

- 콜레라 : 39,000원
- 황 열 : 31,460원

* 백신료 단가가 변경될 경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서 검역소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변경 금액을 문서로 통보

(2) 접종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무료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유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6-309호)의 예방접종 시행비용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

나)「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아 약품 관리 및 보관

1) 백신 수령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확인한다.

2) 백신은 자동온도측정기록장치와 냉장고 이상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백신 전용냉장고에서 2~8℃를 유지·보관한다.

3) 백신의 유효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폐기처분한 백신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붙임 제15호 서식]「예방백신 폐기 보고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검역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4조)

1) 자격 및 신청

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감염내과 전문의 상주,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구비 가능한 의료기관

나) 의료기관장이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담당의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한다.

* 예방접종 담당의사 변경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검역소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정한다.

2) 백신 수급관리

가) 백신 수령 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확인하고 백신전용냉장고(2~8℃)에 보관한다.

나) 백신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보고한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다) 백신의 유효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유효기한 경과로 폐기한 백신은 폐기 당시 백신료로 환산하여 국가에 지불하여야 한다.

라) 백신 폐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마) [붙임 제30호 서식]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을 분기별로 서면 보고하고, 백신 사용량과 배정량 등 수급관리는 질병관리본부 백신수급관리 계획에 따른다.

3) 기타 이행사항

가) 예방접종 접수시 신청인에게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인지 첨부)를 받고, 신청인에게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수신자부담 택배 또는 국립검역소 방문 직접 수령 등)을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하게 한다.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 관할 검역소 간 [붙임 제24호 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관할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관인이 날인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배부 받아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현장 발급을 할 수 있다.

나) 당일 접수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는 관할 검역소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으로 팩스 송부하고, 원본은 월단위로 관할 검역소에 제출한다.

다만,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과 관할 검역소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협약이 체결된 경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월단위로 접수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원본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번호가 포함된 '접종자 현황' 등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할 검역소 지도·감독 사항

(1) 관할 검역소는 반기별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국제공인예방 접종증명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 소요량에 대해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관인이 날인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송부하며 반기별로 증명서 발급 및 폐기 등과 기타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점검사항

증명서 발급 관리	통계관리	• 월별 증명서 발급현황 • 접종자 내역 • 통계일치 여부
	증명서 수불 대장 관리	• 증명서 수불대장 적정 작성 여부
	증명서 발급 신청서 관리	• 발급신청서 적정 관리 여부 • 수입인지적정관리 여부
증명서 폐기 관리	폐기증명서 적정관리여부	• 폐기증명서 수량확인

라)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업무흐름도

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민원인 방문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별지 제31호 서식]
– 발급신청서 하단 여백에 택배발급 및 방문발급 기재
○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작성
– [붙임 제10호 서식] 또는 [붙임 제11호 서식]

⇩

○ 수입인지 구입(발급신청서에 인지 첨부)

⇩

○ 의사 진료

⇩

○ 예방접종

⇩

○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에 접종내역 접종자, 담당의사 등) 입력

⇩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관할 검역소로 송부(fax 등)
○ 관할 검역소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검역소로 재송부(fax 등)

⇩

○ 민원인이 지정한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송부

○ 택배 발송(수신자 부담)
○ 방문 발급 경우 사전예약 필수
○ 방문 발급시 본인 신분확인 필수
– 대리인의 경우 [붙임 제25호 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 확인 후 발급

예방접종면제자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붙임 제12호 서식] 교부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작성·교부

나)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 관할 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소요파악(반기별)

⇩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반기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소요 제출

⇩

○ 관할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관인이 날인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지정기관으로 송부

⇩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민원인 방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별지 제31호 서식]
○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작성
– [붙임 제10호 서식] 또는 [붙임 제11호 서식]

⇩

○ 수입인지 구입(발급신청서에 인지 첨부)

⇩

○ 의사 진료

⇩

○ 예방접종

예방접종면제자

⇩

⇩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및 자체 증명서 발급대장 등 작성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붙임 제12호 서식] 교부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작성·교부

⇩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월단위로 국제공인예방접종발급신청서 및 접종자 현황, 접종자 내역(엑셀형태)를 관할 검역소로 송부

⇩

○ 관할검역소는 증명서 발급·폐기 등 관리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도 감독

03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가 1단계 사업

○ 입국장 검역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교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IT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위험국가(오염지역) 입국자의 여권번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정보를 확보하여,

- 오염지역 방문 자진신고 문자발송 및 의료기관에 여행자 정보 제공으로 진료 시에 환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간까지 해외감염병을 관리하도록 지원

* 기 구축후 사업수행중

나 2단계 사업

○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외국인 의심환자 입국자 정보를 확보하여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를 신속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16년 완료후 17년 1월부터 사업수행

다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통신3사(KT, SKT, LGU+)의 해외로밍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자나 비오염지역 체류 후 입국자를 파악 후

- 통신3사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 귀국 후 해외 감염병 증상 발현시 자진신고(☎1339번) 문자 안내 및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에 활용

* KT와 시범사업은 16년 11월부터 수행, 2개 통신사는 17년 상반기 중 본격 실시

part

Ⅳ

행정사항

1 증명서 관련 업무

2 벌칙 조항

3 기타 사항

Part Ⅳ 행정사항

01 증명서 관련 업무

가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법 제27조, 시행규칙 제21조)

1)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소독대행업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2) 검역소장은 검사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3) 검역소장은 소독명령을 받아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 이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4)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로 돌아가거나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검역소장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6)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여부와 감염병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8) 증명서 발급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위생검사 수수료를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9)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 및 교부는 '그 밖의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에 따른다.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발급절차〉

신 청	⇨	• 선장, 선박의 소유자, 해운대리점이 별지 제22호 서식 및 제23호 서식에 따라 제출(선박이 도착한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신청)
접 수	⇨	• 접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민원처리 기간은 2일(1일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간계산)
위생검사	⇨	• 검역소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참고 2번]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
발 급	⇨	• 위생검사 점검 결과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
기타사항	⇨	• 선박 위생검사 실시 결과 및 증명서 발급 결과를 [붙임 제9호 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1호 「민원사무처리부」 및 검역업무 지침 [붙임 9호] 서식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 기록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증명서 발급관리> 및 <민원증명서 신청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증명서(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1) 신청 및 수수료

가) 운송수단의 장이나 또는 그 소유자가 검역조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

나) 검역조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은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2) 증명서 발급

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나)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을 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소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세균학적 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라)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마) 소독증명서 :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소독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소독증명서」를 내주여야 한다.

바)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 검역조사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붙임 제16호 서식]에 따른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를 내줄 수 있다.

사) 그 밖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교부

1) 재발급 대상

가)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나)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다) 운송수단의 이름, 국적, 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접수 · 처리 절차

재발급 신청(접수)	⇨	발급내역 확인 (관련대장, 증빙서류, 검역정보시스템, 유선확인 등)	⇨	증명서 재발급

* Fax를 통해 기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제출했던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 관련서류 수신

3) 처리기간 : 즉시

4) 구비서류

가) [붙임 제17호 서식] 「검역조치증명서 등 재교부 신청서」 1부
나)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의 경우 제외)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재발급 수수료 : 1,000원(시행규칙 제29조)

6) 재발급 증명서 기재요령

가) 일시(연월일) 등 : 기 발급 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나) 발급 기관 관련 기재 및 직인란 : 재발급 검역소 기재 및 직인

02 벌칙 조항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9조)

1)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 양벌규정(법 제4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3조)

1) 일반기준

가) 검역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검역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200만원
나.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00만원
라. 격리 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5호	200만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	100만원
사. 법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700만원
아.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700만원
자. 운송인이 법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	200만원

3) 참고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03 기타 사항

가 사업계획

1) 검역소장은 검역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도별, 계절별 운송수단의 도착·출발 척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목표량은 인력, 보유장비, 기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량을 설정한다.

3) 사업수행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강상태질문서 보존기간

건강상태질문서 보존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 관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1) 검역소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관인」을 찍어야 한다.

2) 검역소장이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관인」을 찍어야 한다.

라 검역대 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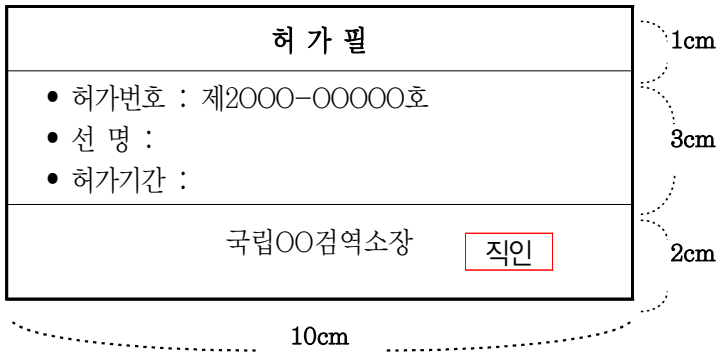
검역소장은 검역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 제21호 서식]에 따른 「검역대 사양」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part V

붙 임

[붙임1] 허가필
[붙임2] 검역 전 승선. 탑승 허가 교부대장
[붙임3] 건강 확인서(Health Statement)
[붙임4] 유증상자 조사표
[붙임5]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접근금지 표지판
[붙임7] 유해검역신청서(시체, 유골, 유물)
[붙임8] 유해검역확인서(시체, 유골, 유물)
[붙임9]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발급기록부
[붙임10]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붙임11]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붙임12]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붙임13]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붙임14]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 · 점검표
[붙임15] 예방백신 폐기 보고서(O분기)
[붙임16]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붙임17] 검역조치증명서 등 재교부 신청서
[붙임18]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붙임19]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붙임20] 국제검역상황
[붙임21] 검역대 사양
[붙임22]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통보서
[붙임23]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 · 점검표
[붙임2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붙임25]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재발급)위임장
[붙임26] 전자검역 심사결과 통보서
[붙임27] 검역조사 결과통보서
[붙임28] 검역조사서
[붙임29] 오염지역 체류 · 경유 자진신고대장
[붙임30] 국제공인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

[붙임 제1호]



[붙임 제2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교부 대장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운송 수단명	성명	생년 월일	소속	담당 업무	허가 목적	허가 기간	결 재			비고
									담당	과장	소장	

[붙임 제3호]

건강 확인서(Health Statement)

□선 명(Name of ship) :

□승객 및 승무원의 수(Number of passenger and crew) :

선내 모든 승객, 승무원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환자 발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all passengers and crews are health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there is no unusual particular of illness occurring on board.

□환자 발생시 작성해주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there is any patient occurring on board.)

성 명(name)	나 이(age)	추정병명(impression)

* 다수의 인원이 동일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발생 인원 및 추정병명만 기록하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many people have the same symptom)

발생인원(the number of patients)		추정병명(impression)	

* 환자 발생시에는 환자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세요.

(Please hand out his health questionnaire when there is any patients occurring on board.)

년 월 일(yyyy mm dd) :

선의 서명(Ship's medical doctor) :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붙임 제4호]

(1면)

유증상자 조사표(설사증상자용)

조사자 성명 : 조사일자 : 20 . . .

1. 입국자 정보

입국일시		편명/선명		출발지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2. 임상적(역학적) 특징

체 온		□ 열감지카메라 (℃) □ 고막체온계 (Rt: ℃, Lt: ℃)				
현 지 병 원 방 문 여 부			약복용 여부 (지사제 등)		발병일	
설사의 특징	양상	□ 물설사 □ 쌀뜨물 □ 점액성 □ 혈변				
	기간	일, 회(가장 심할 때 하루 설사 횟수 : 회)				
동반증상		□ 발열 □ 복통 □ 메스꺼움 □ 구토 □ 두통 □ 오한 □ 설사 후 개운치 않음 (잔변감) □ 근육통 □ 기타 ( )				
섭취음식 및 장소		발병 전 섭취음식은 무엇입니까? ( )				
		음식물의 섭취장소는 어디입니까? ( )				
특이사항						

3. 유증상자* 조치내용

❑ 귀가 조치 (귀가 후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및 병원방문 권고)
❑ 병원 안내
❑ 검체 채취
❑ 기 타

* 유증상자란 설사증상자 또는 37.5℃이상의 발열자를 말함

첨부 :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2면)

유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의 설사증상자용)

조사자 성명 : 조사일자 : 20 . . .

1. 단체현황

입국일시		편명/선명		출발지	
여행기간		여행사명 (단체명)		가이드/담당자 연락처	
여행일정	일 자	여 행 지			

탑승자 현 황	탑승인원(명)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통과 여객	단체여행객(명)		
	계	승무원	승객			총인원	증상	채변

2. 증상자현황

성명	증 상		설사양상	증상발현 일	증상발현 전 섭취음식	섭취 장소	약복용 및 병원 방문여부 (진단명)
	설사기간	설사횟수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물설사·쌀뜨물				
	일	회	점액성·혈변				

3. 조치사항

❑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실시 후 귀가 조치 ❑ 병원 안내 ❑ 병원 후송

❑ 기타

(3면)

유증상자 조사표(37.5℃이상의 발열자용)

조사자 성명 : 조사일자 : 20 . . .

1. 인적사항

입국일시		편명/선명		출발지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2. 임상적(역학적) 특징

체 온	□ 열감지카메라 (℃)	□ 고막체온계 (Rt: ℃, Lt: ℃)			
현 지 병 원 방 문 여 부		약복용 여부 (해열제 등)		발병일	
호흡기질환	다음의 동반 증상 및 증후가 있습니까? □ 기침 □ 인후통 □ 근육통 □ 결막염 □ 콧물 □ 두통 □ 숨가쁨 □ 오한 □ 기타( )				
	발병 14일이내 인플루엔자 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발병 14일이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발병 14일이내 위험지역을 여행 또는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발병 14일이내 살아있는 가금류 또는 가공되지 않은 가금류 또는 그들의 분비물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모기매개질환	여행 전 예방접종을 받거나 예방약을 복용하였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또는 발진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요 □ 모름				

※ 특이사항 :

3. 유증상자 조치내용

❑ 귀가 조치 (귀가 후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및 병원방문 권고)
❑ 병원 안내
❑ 검체 채취 (채변 인후도말 채혈)
❑ 기 타

* 유증상자란 설사증상자 또는 37.5℃이상의 발열자를 말함

첨부 :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붙임 제5호]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앞 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개인정보화일(DB)수집 · 이용 목적**

– 검역조사 관련 서류징구, 검역실적 통계작성, 역학조사 및 유증상자 사후관리, 증명서 신청 및 발급, 검체 채취,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검역조사 관련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업실적보고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 ○○검역소의 검역업무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화일(DB) 이용 목적**

–검역조치, 예방조치 등의 검역업무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 정한 문서보존기간

□ 본인은 검역조사 대상자로서 검역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 면)

□ **개인정보 처리 · 제공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검역법」 : 제12조(검역조사), 제15조(검역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공중보건조치),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 검역조사 등 국립검역소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The agreement to manag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앞 면)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DB)
-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 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gett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tc.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quarantine work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rticle 23 and Article 24.

□ Agree □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ipient
-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The quarantine work of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etc.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rticle 23 and Article 24 in order to perform an quarantine work smoothly.

□ Agree □ Disagree

(뒷 면)

□ The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7),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article 24)
- The Quarantine Act : quarantine inspection(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other than communicable disease in need of quarantine(article 20), shipping into and inspection of dead body etc.(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hygiene in quarantine areas(article 29)

※ Concerning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etc.,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 . .

Name : (Signature)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a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2인 이상)

(앞 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개인정보화일(DB)수집 · 이용 목적
- 검역조사 관련 서류징구, 검역실적 통계작성, 역학조사 및 유증상자 사후관리, 증명서 신청 및 발급, 검체 채취,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검역조사 관련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업실적보고 등의 업무처리 시 활용

□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 정한 문서보존기간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검역업무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화일(DB) 이용 목적
- 검역조치, 예방조치 등의 검역업무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법령에 정한 문서보존기간

□ 본인은 검역조사 대상자로서 검역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 면)

□ 개인정보 처리 · 제공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검역법」 : 제12조(검역조사), 제15조(검역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공중보건조치),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정보주체는 검역조사 등 국립검역소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The agreement to provid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ver 2 peoples)

(앞 면)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DB)
- used for the purpose of requesting documents related quarantine investigation, quarantine statistic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fter care of the sick, issuance of certificates, getting clinical materials, sharing of inform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etc.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quarantine work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rticle 23 and Article 24.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ipient
-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The quarantine work of quarantin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etc.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rticle 23 and Article 24 in order to perform an quarantine work smoothly.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Name : _____	☐ Agree	☐ Disagree

(뒷 면)

□ The Laws related with management and provision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5),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article 17),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article 23), restrictions on management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article 24)
- The Quarantine Act : quarantine inspection(article 12), quarantine measures(article 15), measures taken to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other than communicable disease in need of quarantine(article 20), shipping into and inspection of dead body etc.(article 25), measures for public health(article 26),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article 28), management of health and hygiene in quarantine areas(article 29)

※ Concerning affairs of quarantine inspection, etc.,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 . .

Name : _____ (Signature)
Name : _____ (Signature)
Name : _____ (Signature)
Name : _____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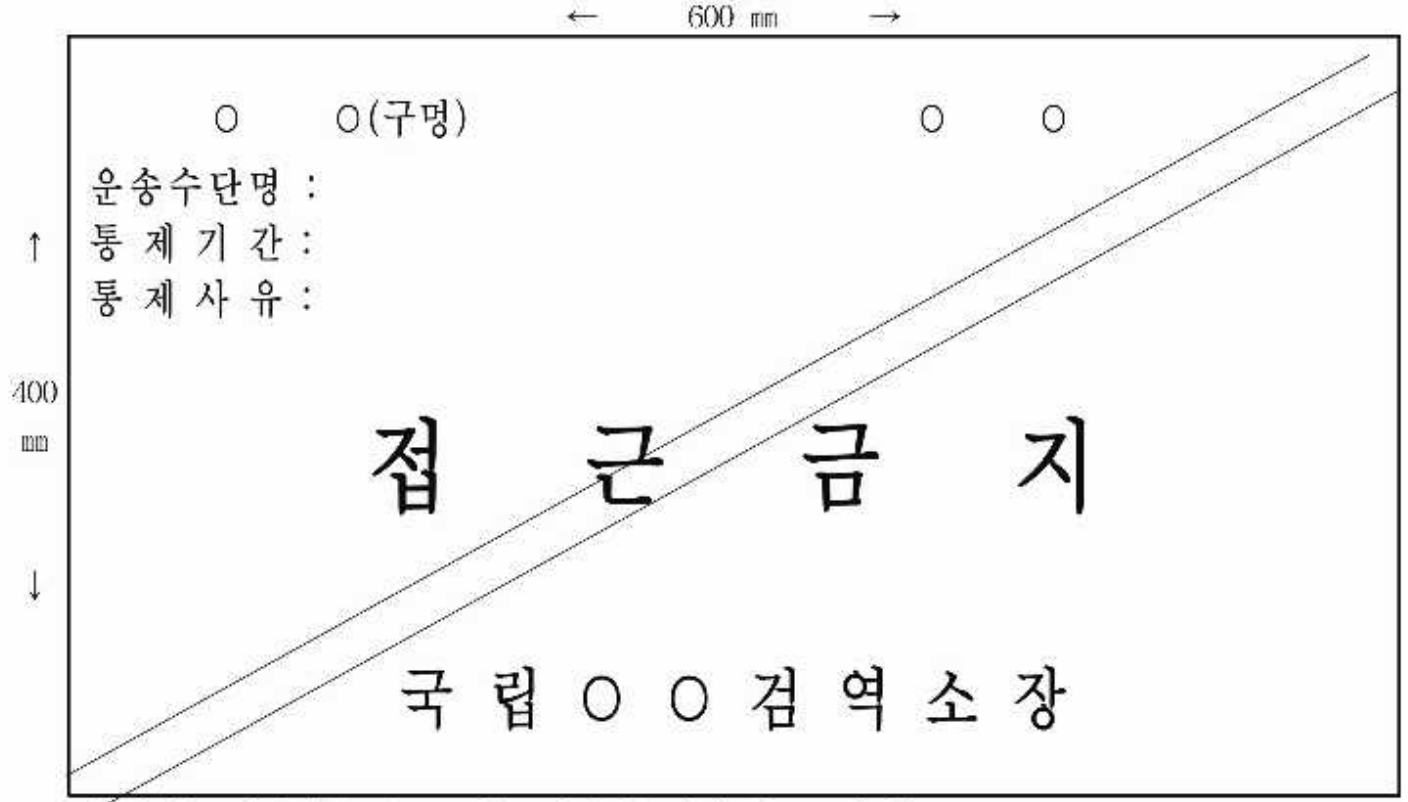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required a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붙임 제6호]

「접근금지 표지판」



※ 사선 : 빨간색(2줄), 글자 : 검정색, 바탕색 : 노란색

[붙임 제7호]

유해검역신청서(시체, 유골, 유물)

운 송 수 단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지역	
	관의종류	□ 알루미늄관 □ 석관 □ 유리관 □ 나무관 □ 기타( )
신청인	성 명	(인)
	전화번호	
	관 계	

「검역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2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유해검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방부처리증명서 1부(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3. 항화물운송장(AWB) 사본 또는 선하증권(B/L) 사본
4.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영사관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붙임 제8호]

유해검역확인서(시체, 유골, 유물)

No. _____

<table>
<tr><td colspan="2">운 송 수 단 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사망자</td><td>성 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생년월일
(여권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유무</td><td colspan="3">(유, 무)
※ 검역감염병 명 _____</td></tr>
<tr><td rowspan="3">보존상태</td><td>1. 관의 침투성 여부</td><td colspan="3">(침투성, 불침투성)</td></tr>
<tr><td>2. 방부처리유무</td><td colspan="3">(유, 무)</td></tr>
<tr><td>3. 관의 밀봉상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검역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검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검역관 (인)

국 립 ○ ○ 검 역 소 장</td></tr>
</table>

〔붙임 제9호〕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발급 기록부

발급 번호	위생 점검 연월일	발급 연월일	선박명	국적	총톤수	회사/ 대리점명	등록 번호	위생관리 점검 상황					위생관리 점검 결과 (관리,면제)	결 재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	벌레의 서식 유무	위생 관리 상태	관련 의견 및 조치	검체 채취		담당	과장	소장

268mm×190mmdlstho용지(2급) 60g/㎡

[붙임 제10호]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1 면)

성 명		생년월일	
체 온	℃	□남 □여	

확 인 사 항	답 변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픈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경련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여성)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예방접종 받기를 희망 합니다.

피접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9개월 미만의 영아 ※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본인의 동의하에 예방접종 ② 임신부, 수유부 ③ 계란, 젤라틴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 ④ 현재 중증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⑤ 흉선 질병(Thymus disease)의 병력이 있거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예: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감염자들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황열예방백신 접종가능 ⑥ 과거 황열예방접종을 받은 후 심각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을 나타낸 사람 ⑦ 희귀한 유전성 과당불내성 환자
접종 후 주의사항
① 14일 이내 헌혈 금지 ② 3일 정도 금주 ③ 3일 정도 사우나, 통목욕 삼가(샤워는 가능) ④ 3~14일 후에 미열과 경한 두통, 몸살(근육통), 주사부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 이상반응(심하고 지속적인 구토나 발진, 이상감각, 악성 두통, 호흡곤란, 경련, 혼수, 산증, 근육 혹은 간 세포융해, 림프구 및 혈소판 감소, 신부전 등)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다발성장기부전(사망까지 가능)과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대한 신경계통 부작용(수막뇌염, 길랭-바레증후군, 급성산재성뇌척수염 등)이 일어날 수 있음(*접종 후 약 1달 이후에도 발생가능). 이상반응 등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기관에 문의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검역관 기록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 립 ○ ○ 검 역 소

(3 면)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 개인정보 항목 : 민감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예방접종업무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 이용 목적
  – 접종 후 이상 반응시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
□ 개인정보 항목 : 민감정보(건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본인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요구자로서 예방접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Pre-check table(Yellow fever vaccination)

(1 면)

Name		Date of Birth	. . .
Body Temperature	℃	□Male	□Female

Questions	Answers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 allergic reaction such as urticaria or rash after taking medications or food(including eggs), or receiving a vaccination?	□YES	□ NO
Have you ever had an adverse event to a vaccine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 ( )	□YES	□ NO
Have you received vaccinations in the past 1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 ( )	□YES	□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had cramp?	□YES	□ NO
Have you ever had been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congenital anomaly, asthma, health problem with lung, heart, kidney, liver or metabolic disease(e.g. diabetes) or a blood disorder? If yes, please specify the health problem. ( )	□YES	□ NO
Do you have cancer, leukemia or any other immune system problem?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YES	□ NO
In the past 3 months, have you taken cortisone, prednisone, other steroids or anticancer drug, or had radiation treatments?	□YES	□ NO
In the past year, have you received a transfusion of blood or blood products, or been given immune (gamma) globulin?	□YES	□ NO
(For women) Are you pregnant or is there a chance you could become pregnant during the next month?	□YES	□ NO

I am willing to be vaccinated as I have undergone a pre-check and listened to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vaccinee's name : (signature or stamp)

(day) (month) (year)

(2 면)

Those who can not be vaccinated
① Infants under 9 months of age ※ The senior of 60 years and over is required to be vaccinated under the agreement because of having the possible allergies after vaccination ②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③ Persons allergic to eggs, gelatine etc ④ Persons with severely high fever(persons whose temperature is 38℃ or over) ⑤ Persons who have the history of thymus disease, or persons with inborn or acquired immune malfunction ※ As for persons infected with HIV, vaccination against yellow fever is allowed once they don't have AIDS yet or doctors order them to be vaccinated. ⑥ Persons who have ever had serious allergies to yellow fever vaccination ⑦ Persons with hereditary fructose intolerance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fter vaccination
① No blood donation is allowed for 14 days after vaccination ② No drinking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③ Neither sauna nor full bath for 3 days after vaccination(but a shower is allowed) ④ 3~14 days after vaccination, some can have a slight fever, a headache, illness from fatigue(muscle pain), a pain on the injection part, etc. In rare cases, some can have allergies [severe lasting vomiting or rash, paresthesia, malignant headache, shortness of breath(dyspnea), cramp, coma, acidosis, lysis of muscle or liver cells(myocyte or hepatocyte), decreased lymphocyte and blood platelet, renal failure, etc] and please contact vaccination authorities if you have one or more of these symptoms.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검역관 기록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여부	□ 예 □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 립 ○ ○ 검 역 소

(3 면)

The agreement to manag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vaccination work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nd Article 23.

☐ Agree ☐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ipient : healthcare organiz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 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nd Article 23, as a demand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immunization, in order to perform an immunization work smoothly.

☐ Agree ☐ Disagree

※ Concerning affairs of immunization,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vaccin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 . .

Name : (Signature)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붙임 제11호]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1 면)

성 명		생년월일	
체 온	℃	□ 남	□ 여

확 인 사 항	답 변	
오늘 몸에 열이 있거나 아픈 곳(위, 장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입원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본인은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예방접종 받기를 희망합니다.

피접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2 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현재 중증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② 최근 다른 약을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중이면 접종 전 상담 ※ 임산부, 수유부는 접종이 가능하나 의사 및 약사와 상담 ③ 급성위장관질환이나 급성열성질환이 있는 경우 ④ 경구콜레라 예방백신에 대한 과민증이 있는 경우
접종후 주의사항
① 24시간 이내 헌혈 금지 ② 접종 1시간 전과 접종 후 1시간이내에는 음식 및 음료, 다른 의약품 섭취 금지 ③ 3일 정도 금주 ④ 가끔 위장 관계증상(복통, 위경련, 설사)이 있을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 고열, 전신적인 불편감,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콧물, 기침, 현기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 반응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기관에 문의
콜레라 예방접종 참고사항
①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 기초접종 2회, 접종은 1~6주 간격, 지속적인 방어 효과를 위하여 2년 이내 재접종 ② 2~5세 소아 : 기초접종 3회, 각각의 접종은 1~6주 간격,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6개월 이내 재접종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검역관 기록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여부	□ 예 □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 립 ○ ○ 검 역 소

(3 면)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 개인정보 항목 : 민감정보(건강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예방접종업무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 이용 목적
  – 접종 후 이상 반응시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
□ 개인정보 항목 : 민감정보(건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본인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요구자로서 예방접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Pre-Check table(Oral Cholera vaccination)

(1 면)

Name		Date of Birth	. . .
Body Temperature	℃	□Male	□Female

Questions	Answers	
Are you having fever or sick/ill related to stomach, intestine, etc. today? If yes, describe how you are. ( )	□ Yes	□ No
Is there anything you are allergic to ? If yes, what is it? ( )	□ Yes	□ No
Have you ever had side effects after you were vaccinated If yes, what is the name of vaccination. (the name of vaccination :)	□ Yes	□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been in hospital? If yes, what is the reason?( )	□ Yes	□ No

I am willing to be vaccinated as I have undergone a pre-check and listened to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Vaccinee's name : (signature or stamp)

(day) (month) (year)

(2 면)

Those who can not be vaccinated
① Persons with severely high fever(persons whose temperature is 38℃ or over) ② In case of having recently taken or taking other medicines, consulting your doctor before receiving vaccination. ※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are allowed to be vaccinated but are sure to see doctors or pharmacists before vaccination ③ Persons with hypersensitivity to oral cholera vaccination ④ In case of having recently gotten or getting acute gastrointestinal diseases or acute febrile illness(AFI)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after vaccination
① No blood donation is allowed for 24hours after vaccination ② Neither food nor drink is allowed for 1 hours before vaccination and for 1 hour after. ③ No drinking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④ Neither sauna nor full bath is allowed(but a shower is allowed) ⑤ Occasionally, there could be stomach problems(stomachache, stomach cramps). In rare case, some can have high fever, discomfort all over the body, nausea, vomiting, lack of appetite(anorexia), a runny nose, a cough, dizziness, etc and so please contact vaccination authorities if you have one or more of these symptoms.
Reference
① Children over 6 years old and adults: required to be basically vaccinated twice at the interval between 1 and 6 weeks and once again 2 years later for the effect of the sustained protection ② Children between 2 and 6 years old : required to be basically vaccinated 3 times at the interval between 1 and 6 weeks and once again 6 months later for the effect of the sustained protection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검역관 기록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여부	□ 예 □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 립 ○ ○ 검 역 소

(3 면)

The agreement to manage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held and used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with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vaccination work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and Article 23.

□ Agree □ Disagree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ipient : healthcare organiz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The purpose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uses such information

–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organization and quarantine station as adverse effects after vaccination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 sensitive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a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holds and uses such information

– Period for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and held is according to duration of recordkeeping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I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and Article 23, as a demand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immunization, in order to perform an immunization work smoothly.

□ Agree □ Disagree

※ Concerning affairs of immunization, you have a right to reject to give your consent to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for providing and manag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f you reject to give your consent, vaccin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can be restricted.

. . .

Name : (Signature)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e do not exploit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information the provider agrees, and when you want to den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you can require browsing, correcting or deleting them through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 In cas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you need to obtain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붙임 제12호]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앞면)

MEDICAL CONTRAINDICATION TO VACCINATION
예방백신접종에 대한 의학적 금기사항

This is to certify that immunization against
이 문서는 ( )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기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_____ for _____ is medically
(Name of disease-질병명) (Name of traveler-이름)

contraindicated becaus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_____

_____

_____ . . . _____
(Date:dd/mm/yyyy) (Signature of supervising clinician)
(발급일:일/월/년) (담당의료인의 서명)

11×7cm (황색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INFORMATION FOR VACCINATION EXEMPTION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항》

○ Reasons other than medical contraindications are not acceptable for exemption from vaccination(의학적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예방접종 면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What is mentioned below can be applied to the travelers who hold this paper in the destination country.(본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목적지(도착지) 국가에서 다음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uarantine may be required for a few days at the destination. (도착지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The entry into the country which require the yellow fever or cholera vaccination certificate can be refused.(황열 또는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To get vaccinated can be required in the destination country. (목적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

11×7cm (황색인쇄용지(특급) 120g/㎡)

[붙임 제13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황열(Yellow fever) □ 콜레라(Cholera)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접수번호	
증명서번호	

「검역법」 제28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reissuance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성 명 Full Name	국 문 Kor.		성 별 Sex	
	영 문 Eng.		국 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ID No.			전 화 Tel.	
주 소 Present Address				
전 발급 검역소명 Former Issued Office			전 발급 연월일 Former Issued Date	
재발급 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접종받은 예방백신 Lot. No.	

신청 연월일(Date) :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Applicant) _____

접수일부인

구비 서류	1. 기 발급받은 증명서(분실의 경우 제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위임장(대리인 발급시)	수입인지 첨부 Attach the Revenue Stamp

210㎜×297㎜(일반용지 70g/㎡)

[붙임 제14호]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점검표

1. 관리자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2. 주요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점 검 결 과		
		0	x	비 고
가	방역소독 계획수립			
나	결과 보고 여부			
다	방역소독 실적 달성여부 (실적/계획)			
라	방역소독 결과 확인			

(건의사항)

3. 방역자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독업신고번호			
소재지 / 연락처			

4. 방역 관련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인적사항			확인서류
자격	▪ 소독업신고증, 및 관련 자격증	성명:			
교육	▪ **소독대행업자(종사자)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보수교육 : 1회 이상/3년	이수자: 이수일자:			
장비	항 목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비 고	
	▪ **소독에 필요한 장비** – 분무소독기 : ( )대				
	– 그 외 살충 · 살균소독에 필요한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약품	약품 및 사용내역(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약품)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비 고	
	▪ 약 품 명 : 1. 2.				
	▪ 1회 희석량 : 1. 2.				
	▪ 총 사용량 : 1. 2.				

위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관리자) : _____(인) 확인자(방역자): _____(인)

지도 · 점검자 : _____(인) _____(인)

[붙임 제15호]

예방백신 폐기 보고서(0분기)

국립00검역소

약품명	단위 및 규격	제조 회사명	제조 번호	약품 수령일	유효 기한	폐기 수량	폐기 일자	폐기처분사유	폐기 방법

[붙임 제16호]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신청인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운송수단 명	
	주 소			

▣ **검체채취**

검체번호	검체채취일	검체채취자	검체종류	채취목적	비고

위 사람의 (검체) 에 대한 (병명)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확인서를 드립니다.

▣ **검사결과**

검사방법	성적	판정연월일	기타
세균검사			
바이러스검사			
혈청학적검사			
기타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직인

[붙임 제17호]

검역조치증명서 등 재교부 신청서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수입인지 뒷면 붙임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검역법」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 )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reissuance of the ( )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 전 발급 검역소명(Former Issued Office) : 국립_____검역소

□ 전 발급 연월일(Former Issued Date) : 년 월 일(yyyy/mm/dd)

□ 재발급 신청사유 및 내용(Reason for Application)

구 분	변 경 전(Before)	변 경 후(After)
재발급 신청사유 (Reason)		
선 박 명 (Name of Vessel)		
국 적 (Nationality)		
등록번호 (IMO/Registration No)		

신청 년 월 일(Date) :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또는 대리인(Applicant) : (인)(signature)

접수일부인

구비서류	1. 분실한 경우 : 해당 없음 2. 훼손된 경우 : 해당 증명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제18호]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 목 : 수입고철소독계획서

---

1. 일반사항

고철적재선박명		**선박총톤수**	
고철수입국명		**고철적재량(M/T)**	
고철하역일시 (하역기간)		**수입자**	

2. 소독실시계획

구 분	수 입 고 철
소독종류	
소독물량(M/T)	
사용약품명	
사용 약제량(Ⅼ)	
소독일시(기간)	
소독인원	
소독장소	
소독장비	

고철수입업체 감독관 :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 (인)

[붙임 제19호]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 목 :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

1. 적재선박명 :
2. 수입국명 :
3. 수입자명 :
4. 소독내용

가. 소독물량

○ 고철량(M/T) :

○ 하역장(야적장) 면적(㎡) :

나. 사용약품명 :

다. 사용약제량

○ 원제량(ℓ) :

○ 희석된 약제량(ℓ) :

○ 희석비율 :

라. 소독일시(기간) :

마. 소독인원(명) : 명. 끝.

고철수입업체 감독관 :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 (인)

[붙임 제20호]

(앞면)

국 제 검 역 상 황

20 년 / 분기 국립○○검역소

1. 선박 및 항공기

구분		선박 척수	항공기 대수
총계			
국적별	한국적		
	외국적		
지역별	오염지역		
	비오염지역		

2. 인 원

구분		선박	항공기
계			
탑승 인원	선원(승무원)		
	승 객		
국적별	한국인		
	외국인		
	환승인		
지역별	오염지역		
	비오염지역		

3. 육로검역

구분	총계	자동차	열 차
검역수(대)			
인 원(명)			

4. 국제공인 예방접종

대상별	총계	국적별	
		한국인	외국인
계			
콜레라			
황 열			

5. 증명서발급

구분		건수	수수료 (원)
총계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소계		
	신규		
	재접종		
	재교부		
	면제		
	확인날인		
선박 관련 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소독증명서		
	재발급		
기타			

6. 병원체 검출현황

구분		1군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황열
양성건수										
양성검체구분	사람									
	선박가검물									
	항공기가검물									
	해수									
	하수									
	어패류									
	위생업소									
	기타									

7. 유증상자(명)

계	발열감시 (37.5℃ 이상자)	건강상태질문서	비율 (유증상자/검역인원)

8. 승선(기)검역

구분	계	한국적	외국적
항공기(대)			
선박(척)			

9. 전자(비승기)검역

구분	계	한국적	외국적
항공기(대)			
선박(척)			
보건위생관리			

10. 검역조사 생략

구분	계	전부생략	일부생략	보건위생관리
항공기(대)				
선박(척)				
열차(대)				
자동차(대)				

11. 소독명령(건)

구분	쥐잡이	벌레잡이	살균소독
계			
항공기			
선박			
보건위생관리			

(뒷면)

국 제 검 역 상 황 작 성 요 령

1. 선박 및 항공기

① 국적별 :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적(한국적, 외국적)에 따라 척수 및 대수로 구분하여 기재
- –기준일자는 검역완료일시를 기준으로 작성
- –선박척수는 검역 통보된 척수로 작성한다.
- –한국적과 외국적의 합이 총계가 되어야 하고, 척 · 대수의 총계는 8.승선(기)검역, 9.전자(비승기)검역 및 10.검역조사생략(보건위생관리는 제외)의 합과 같아야 함.

② 지역별 : 선박 및 항공기의 출발 · 경유지(오염지역, 비오염지역)에 따라 척수 및 대수로 구분
- –오염지역 : 오염지역인 최종 출발지 또는 최종 출항지로부터 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및 항공기를 척수 및 대수로 구분
- –비오염지역 : 오염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출발 · 경유한 척수 및 대수로 구분
-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오염지역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감시기간이후에 입항한 선박은 오염지역으로 등록하고 검역조치에 따라 승선검역 또는 전자검역으로 분류
-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의 합이 총계가 되어야 함.

2. 인원

①탑승인원 : 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인원을 선원(승무원)과 승객으로 구분

②국 적 별 : 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인원을 한국인, 외국인 및 환승인으로 구분

③지 역 별 : 선박 및 항공기의 출발 · 경유지에 따라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으로 구분하여 탑승인원 기재

- – 검역조사생략 등 모든 입항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 기제
- – 탑승인원의 합 및 국적별, 지역별 각각의 합은 총계와 같아야 함.

3. 육로 검역

– 자동차 · 열차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검역대수 및 인원을 기재

4. 예방 접종

– 예방접종을 실시한 실적을 국적별(한국인과 외국인) 및 대상별(콜레라 및 황열)로 구분하여 기재

5. 증명서발급

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 신 규 : 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 재 접 종 : 증명서를 소지하고 접종만 이루어진 경우
- • 재 교 부 : 접종력이 있는 사람 중 증명서만 발급을 한 경우
- • 면 제 : 9개월 미만의 영아 또는 기타 사유로 예방접종을 면제한 경우
- • 확인날인 :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접종한 경우로서 담당의사의 "예방접종필증명서"를 제시받아 증명서 발급 또는 확인날인, 면제증명서를 교부 한 경우 기재

② 선박관련 증명서
- • 선박위생관리증명서 :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발급
- •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발급
- • 소독증명서 : 소독증명서(별지제30호 서식) 및 수출화물소독증명서(별지제27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발급
- • 재발급 : 위의 증명서를 재발급 한 경우
- • 기 타 : 위에 속하지 않은 모든 증명서

[예 :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 건수 기재

6. 병원체 검출현황

–양성건수 : 검체에서 검출된 양성 병원체를 1군/3군/4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감염병별 병원체 양성은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을 기준으로 검출된 건수만 기재)

–양성검체구분 : 양성으로 판별된 병원체에 대한 검체를 구분하여 기재

–기준일자 : 양성검체건수는 검사완료일(판정일) 기준으로 작성(단, 검사건수에 대한 통계 요구 시 채취일 기준으로 작성)

7. 유증상자(명)

–유증상자 수를 발열감시 상의 유증상자와 건강상태질문서 상의 유증상자로 구분하여 기재

–비율은 유증상자 계(발열감시 상의 유증상자와 건강상태질문서 상의 유증상자의 합계)를 검역인원으로 나눈 비율로 기재)

–발열감시는 열감지카메라 등을 통해 발견된 37.5℃이상의 유증상자임

8. 승선(기)검역

–항공기 및 선박의 승선/승기 검역대수를 한국적 및 외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재(승선/승기 : 직접 선박/항공기에 승선(탑승)하여 가검물 채취 등 검역조사를 한 경우)

9. 전자(비승기) 검역

–항공기 및 선박의 전자 혹은 비승기 검역대수를 한국적 및 외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항공기 및 선박의 전자 혹은 비승기 검역 실시 후 보건위생관리실적을 한국적 및 외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비승기는 항공기 검역 중 직접 탑승하지 않고 가검물 채취건수가 없는 경우

10. 검역조사 생략

–선박, 항공기, 열차 및 자동차의 검역조사생략을 전부생략, 일부생략 및 보건위생관리로 구별하여 기재

–항공기와 선박별 한국적 · 외국적 대수 및 척수를 별도 구분하여 기재

11. 소독명령

–항공기 및 선박의 소독명령을 내린 경우, 쥐잡이, 벌레잡이 및 살균소독으로 구분하여 기재

–전자검역 및 검역조사생략의 항공기 및 선박 중 사후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소독명령을 내린 경우 쥐잡이, 벌레잡이 및 살균소독으로 구분하여 기재

–자체소독으로 발생되는 증명서는 5.증명서발급 실적에 반영

–검역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포선박 및 위생검사신청 선박 소독은 선박실적에 포함하여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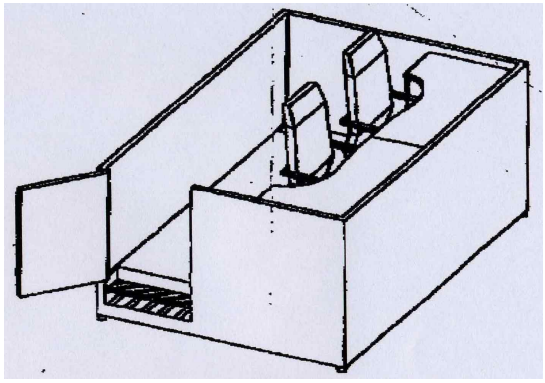
[붙임 제21호]

검역대 사양

구 분	규 격 (가로×세로×높이, ㎝)	형 상	재 질	비 고
고정식	300×200×135 (바닥높이 30)	별도1	목재	○ 위치 : 입·출국장 입구
이동식	200×100×103	별도2	〃	○ 위치 : 각 게이트

※ 검역대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1개조로 구성하며, 규격 및 출입문 위치는 장소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도 1] 고정식



[별도 2] 이동식



[붙임 제22호]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통보서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 통보서〉

○ 수신자 :

○ 도착(입항)예정 일시 :

○ 운송수단명 :

○ 생략 사유 :

○ 「검역법」 제6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 건의 심사결과 (적합/부적합)을 통보합니다.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합격한 운송수단의 다음 도착지가 국내일 경우, 다음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반드시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 . . .

국립○○검역소장 직인

[붙임 제23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 · 점검표

1. 소독업 신고 내역

상 호		소독업 신고번호	
대 표 자		소독업 신고일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2. 주요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인적사항	확인서류
자격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1인)	성명: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교육	■ **소독대행업자(종사자)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 – 보수교육 : 1회 이상/3년	이수자: 이수일자:	교육이수증

	항 목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비 고
시설	■ **사무실과 유독물 보관장소 별도 구획**			
	■ **유독물 보관장소의 안전성 확보** – 환기시설/온도 · 습도계/방재장비 유무/잠금설비			

	항 목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비 고
장비	■ **소독에 필요한 장비**			
	– 가스측정기 :( )대 이상			
	– 가스방독면(정화통 포함) : ( )개 이상			
	– 기타 운송수단 · 화물소독(살충 · 살균소독 포함)에 필요한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기타	■ **소독업무 실적과 약품사용량 등 수급내용** – 약품잔량 기준(공항검역소는 제외) (HCN : ( )kg, MB : ( )kg,기타약품( ): ( )kg)	※ 소독실시 대장 및 소독약품 수불 대장 확인		
	■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지도(지적) 조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약품 사용 여부**			

위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소독업무대행업자): (인)

지도 · 점검자 : (인)

[붙임 제24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국립(　　)검역소 · (　　)병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보건복지부 국립(　　)검역소'와 '(　　)병원'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하나, '보건복지부 국립(　　)검역소'와 '(　　)병원'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하나, (　　)병원은 국립(　　)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 관인이 날인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배부 받아 현장에서 직접발급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하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와 관련한 내용과 방법은 「검역업무지침」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국립(　　)검역소
소장 ０００
(서명)

(　　)병원
원장 ０００
(서명)

[붙임 제25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 위임장

위임인 (접종받은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관계 :

□ 위임사항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황열/콜레라) 발급(재발급) 신청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붙임 제26호]

〈전자검역 심사결과 통보서〉

○ 수신자 :

○ 입항예정 일시 :

○ 운송수단명 :

○ 전자검역 심사 결과 :

○ 「검역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전자검역 신청」 건의 심사결과 (합격/불합격)을 통보합니다.

- (합격된 선박) 선박의 장은 선박의 도착 즉시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승무원·승객명부,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을 검역소장에게 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 (불합격된 선박) 「검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은 후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20 . . .

국립○○검역소장 직인

[붙임 제27호]

검역조사 결과통보서
(Notice of Sanitation Results)

□ 수신자(Dear) :

□ 일 시(Issue Date) :

우리 검역소에서 실시한 선박가검물 세균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_____이 검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that: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the _____ was detected from the under-mentioned vessel.

해당 선박의 장으로 하여금 선원 및 승객에 대한 감염병 예방홍보와 위생시설에 대한 자체소독과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건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hare this notice with your all crew members and keep your facility and all equipment clean and sanitary immediately.

□ 운송수단 소유 회사명(Name of Owner Company) : _____

□ 국제해사기구 고유번호(IMO Number) : _____

□ 선 명(Name of Vessel) : _____

□ 선적항(Country of Registry) : _____

국립○○검역소장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붙임 제28호]

검역조사서 QUARANTINE SURVEY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송수단명 Vessel · Flight · Train · Car No.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Registration
출발지명 및 일시 Name of departure place/Date	승무원의 수(명) Number of crew	승객의 수(명) Number of passengers

1. 보건·위생 상태 신고 현황 Reported for Health and sanitation	사망자 Existence of Deads	[ ]없음 No [ ]있음 Yes(명)	
		※ 있을 경우 If yes,	사망경위 Details of an accident:
	감염병(의심) 환자 Patients of Infectious disease (suspected)	[ ]없음 No [ ]있음 Yes	
		※ 있을 경우 If yes,	[ ]설사 diarrhea 명 [ ]구토vomiting 명 [ ]복통 stomachache 명 [ ]발열 fever 명 [ ]호흡곤란dyspnea 명 [ ]기타 (etc.)
	운송수단 내 비상 의약품 Having Emergency Medicine in the convey	[ ]없음 No [ ]있음 Yes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비상 의약품 투여 내용 Content for treating the emergency medicine and emergency care for patients		
2.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사항 Fever monitoring and requirements for questionnaire of quarantine	발열감시 결과 이상 유무 The result of fever monitoring that is abnormal or not	[ ]없음 No [ ]있음 Yes	
		※ 체온측정자 수 The number of measuring temperature : 명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Requesting the quarantine questionnaire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Not showing the symptom : 명 [ ]증상이 나타남 Showing the symptom : 명	
3. 운송수단의 위생상태 점검사항 The convey checklist of Sanitary condition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Inhabiting the vector of infectious diseases or not	[ ]없음 No [ ]있음 Yes	
		※ 서식(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상태 Cleanliness of kitchen and food storage	[ ]양호 Good [ ]불량 Bad	
		※ 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의심)된 적재화물 The onboard cargos exposed to communicable disease agent	[ ]없음 No [ ]있음 Yes	
		※ 오염(의심) 내용 Suspected information	
	기타 위생상태 Other sanitation	[ ]양호 Good [ ]불량 Bad	
		※ 의심 내용 Suspect information	

4. 검체 채취 Collecting the Samples	검체번호 The number of Samples	검체명 The name of samples	채취 장소 The place of collect	비고 Note

5. 검역조사 결과 The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 ]이상 없음 Good [ ]이상 있음 Bad
	※ 이상 시 조치사항 및 사유 The Measures and Reasons for abnormality

검역조사 일시: 년 월 일 시 분
The date of quarantine inspection Year Month Day Hour Minute

검역관 성명: (서명)
The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운송수단장 성명: (서명)
Master Name Signatur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제29호]

오염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

신고일	신고자 (국적,생년월일)	연락처	편명/ 선박명	체류・경유 오염지역 및 해당 기간	특이사항(증상 등) 및 조치사항	담당 검역관	비고
'17.8.8	홍길동 (한국, 63. 2. 6)	010-1234-5678	KE838	○ 미얀마(폴리오) '17.7.28.~8.1(5일)	건강상태질문서에 콧물·기침 증세가 있다는 응답에 따라 체온측정,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등 실시	김철수	

[붙임 제30호]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

(2000 년도 / 0월)

기관명 :

약품명	단위 (규격)	전년도 이월량	배정량		총잔량 (00.0월) ②	사용량		폐기량		보관량 (①+②-③-④)	비고
			당월①	누계		당월③	누계	당월④	누계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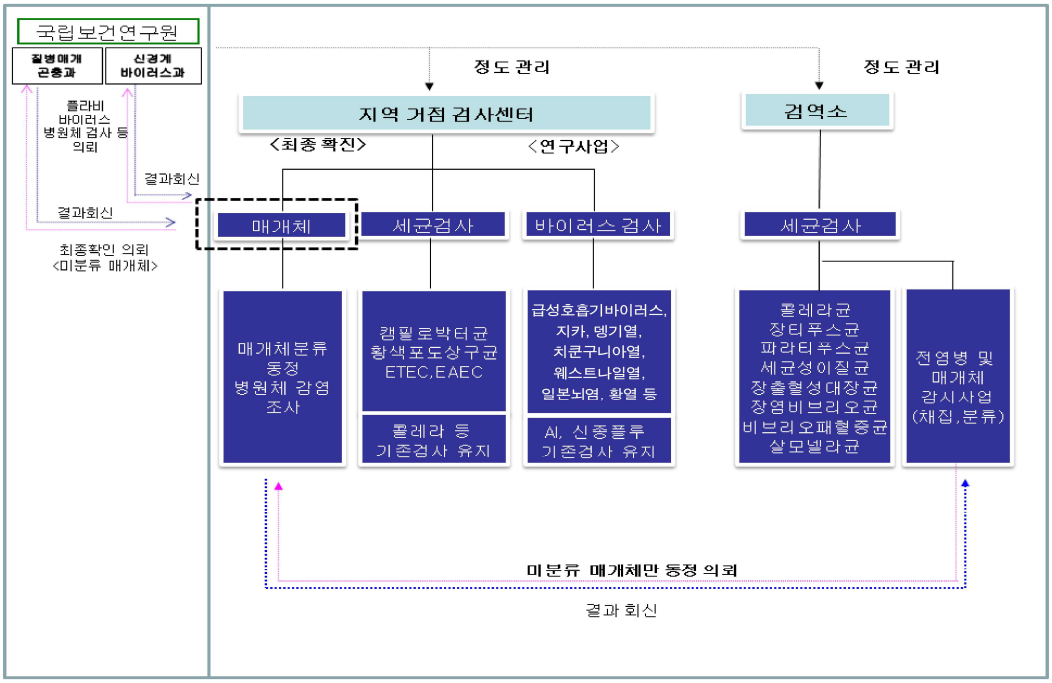
VI

참 고

[참고 1] 지역거점 검사센터 및 검역소 역할
[참고 2]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
[참고 3]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참고 4] 감염병 주의사항
[참고 5] 소독약품(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참고 6] 임시격리실 설치·운영 기준
[참고 7]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참고 8] 검역조사서 작성·보관 방법

[참고 1]

지역거점 검사센터 및 검역소 역할



※ 검역 대응반 구성 · 운영도



[참고 2]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

1. 점검 장소별 점검요령

가. 조리실(Galley)

1) 식품조리 시 이용시설의 주기적 청소 및 청소일지 사용 여부

* 천정·바닥·내벽 등의 청결상태

2) 식품 안전보관, 준비 및 세정방법 여부

* 식품 적정 최소온도 및 최대온도 유지

3) 최소 1개 이상의 핸드워싱 머신 및 관련시설 설치 유무

* 페이퍼 타월/핸드드라이어, 비누 및 쓰레기통

4) 식기·조리기 취급

① 소독시설 유무

② 식기류의 보관상태

③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 소독시설이라 함은 소독용 기기 또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증기의 열탕을 말한다. 식기류의 보관 장소는 문짝이나 망문이 없어도 청결하게 되어 있고 조리실 식당 등에 방충시설이 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5) 적절한 조명 및 충분한 환기시설 등 가동 유무

① 방서·방출시설 구비

② 배수구 차단성

③ 문·창문·환기구의 밀폐성

6) 조리실 및 조리원의 위생개념

①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착용 및 청결상태 유지

② 손·손톱 등의 청결상태 유지

③ 예방접종증명서 및 AIDS(음성) 증명서 소지여부

나. 식료품저장실(Pantry) / 창고(Stores)

1) 위생적 보관 및 관리

① 보관품은 바닥·벽과 일정간격 유지

② 청소 및 소독실시

2) 적정 보관 및 관리

① 식품의 청결도(유통기한 및 식품 적정온도)

② 냉장고의 온도(온도측정계기 설치 여부)

〈기준 온도〉
- 냉동식품 : –18℃
- 육류·어류 : 0~3℃ 이하
- 우유·유지류 : 4℃ 이하
- 과실·야채 : 7~10℃ 이하(냉장보관)
- 냉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육류 및 육류 가공식품, 어류 및 어류가공식품, 우유 및 우유가공식품, 달걀 및 달걀 가공식품 5℃ 이하 유지 / 과일과 야채는 10℃ 이하 보관

다. 선창(Hold) / 화물(Cargo)

1) 용수나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

2) 설치류나 벌레의 서식 등 유무

* 검사 시 선창의 완벽한 검사를 위해 모두 비워있어야 함

라. 선원실(Quarters:crew) / 사관선실(Officers) / 객실(Cabin passengers)

1) 청결 관리 여부

① 침구류, 의복 등의 청결상태

② 적절한 환기유지

2) 개인 화장실 위생적 관리

① 바닥·벽·바닥과 벽 연결부위의 청결상태

② 청소 및 소독실시

마. 갑판(Deck space) / 엔진실(Engine room)

설치류나 벌레의 서식 등 유무

바. 음용수(Portable water)

1) 배수관

① 탱크파이프 전용·겸용 여부

② 주수구·통기구 관리

2) 계량기

① 계량식 유무

② 측량기 보관상태

3) 소독제의 량(크로르칼키 5kg이상)

사. 하수(Sewage)

하수시스템 누출, 오버플로우 또는 분리 여부

아. 의료시설(Medical facilities)

1) 의약품 보관시설 및 의료폐기물 처리공간 확보 여부

2) 진료기록 관리 여부

3) 진료시설 청결 유지관리 여부

4) 의약품 및 예방접종 보유현황

자. 기타(Other)

1) 선내 전반의 정돈 상태

하역중의 선박을 검사할 때에는 하역장소, 하역으로 인한 통로, 바닥 등의 불결상태는 점검에서 제외

2) 공중 화장실 관리

① 유수량·비누 비치 여부

② 청결상태

3) Ballast Tanks

Ballast Water 위생·관리 상태 점검

4) 방제 및 위생관리 등

① 크레졸 2ℓ , 살충제에어로졸300㎖ 12~25개(유제원액 1~2ℓ)

② 쥐틀 5개 이상, 쥐약 500g(액체 500cc이상), 쥐막이판(Line+2개 이상)

③ 예방접종 보유여부는 감염병의 국내유입 우려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외에는 참고적으로 검사 실시

2. 점검 항목별 작성요령

가.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Discovery and marks of rats)

1)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YES'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

나. 벌레의 서식유무(Insects)

1) 벌레의 서식을 확인한 경우 'YES'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

다. 위생· 관리상태(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1) 위생·관리 상태 확인 결과 양호한 경우에는 'GOOD'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AD'

3. 관련조치 및 의견 작성

관련조치 및 의견 내용을 기재(예 : 소독명령, 자체소독, 시정조치 등)

4. 검체채취 작성요령

검체채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별로 검체번호, 검체명, 채취장소를 기재

[참고 3]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민원사무명	근거 법령	처리 기한	처리절차	구비서류 및 수수료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별지 제25호)	법 제27조	2일	신청→접수→확인(위생검사)→증명서발급	• 인터넷,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 위생검사수수료 시행규칙 '별표3' 참고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	법 제28조제1항	2일	신청→접수→소독→증명서발급	•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소독증명서(물품) (별지 제27호)	법 제28조제2항	2일	신청→접수→검사→증명서발급	•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수수료 – 증명서 : 1,000원 – 검사료 : 실비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	법 제28조제2항	5일	신청→접수→검사→증명서발급	• 전자, 우편,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수수료 – 증명서 : 1,000원 – 검사료 : 실비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	법 제28조제3항	5일	신청→접수→검사→증명서발급	• 전자, 우편,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수수료 ·– 증명서 : 1,000원 ·– 검사료 : 실비
소독증명서(운송수단) (별지 제30호)	법 제28조제4항	2일	신청→접수→소독확인→증명서발급	•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별지 제32호)	법 제28조제3항	즉시	신청→접수→예방접종→증명서발급	•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31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 예방접종수수료 – 콜레라 : 실비 – 황 열 : 실비

[참고 4]

감염병 주의사항(1)

□ 개인 및 가정의 위생수칙

○ 음식물 조리시, 외출 후,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합니다.
○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도마·칼 등 조리 기구는 깨끗이 잘 씻고 자주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 설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 국외여행후 여행객이나 가족 중 설사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소재지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설사증상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 발열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귀국후 발열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소재지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자택 격리될 경우

○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호흡기 분비물, 대변, 소변)을 다룰 때는 일회용장갑을 이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자의 식기, 수건 등은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이 묻은 화장실, 변기 등은 소독제로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 기침, 재치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감염병 주의사항(2)

구 분	수인성질환 예방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호흡기질환 예방 (사스 등)	열성질환 예방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등)
개인 및 가정의 위생수칙	○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합니다. ○ 주방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외출을 삼가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십시오. ○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 의심증상이 생기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여행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예방접종이나 말라리아 약을 복용합니다. ○ 살충제,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모기장, 모기향, 살충제, 긴소매, 긴바지 등을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합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 국외여행 후 여행객이나 가족 중 설사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 설사증상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리실 때 검역관에게 제출하십시오. ○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 또는 고막형 체온계로 체온측정을 받게 됩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 황열은 악성적인 열병이며 고열, 요통, 현기증, 쇠약,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 말라리아는 발열(규칙적), 오한과 함께 39~40℃까지 고열증상이 나타납니다. ○ 두통, 오한, 고열(39~41℃), 안구통, 근육통, 피부발진 등이고 코피도 날 수 있습니다. ○ 위의 증상이 나타날시 여행지나 귀국 후 즉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시 유의사항	○ 원인 불명의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호흡기 분비물, 대변, 소변)을 다룰 때는 일회용 장갑을 이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격리자의 식기, 수건 등은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이 묻은 화장실, 변기 등은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 기침, 재치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참고 5]

소독약품(살충 · 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Ⅰ. 기본방향

○ 철저한 검역업무 수행으로 해외로부터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소독대행업체의 소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Ⅱ. 적용대상 : 소독대행업체(살충·살균 소독)

Ⅲ. 관련법령 :「검역법」 제15조 및「검역법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Ⅳ. 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명시

○ 소독결과 확인시 「소독약품별 약제사용 기준」에 따라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에 명시된 약품 이외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소독약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유무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

Ⅴ. 행정사항

○ 소독명령에 대한 소독대행업체의 소독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 '소독약품별 약제사용 기준'을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제품명(한글)	네버바이트40(퍼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싸이언스	업허가번호	0494
허가/신고일	2000-08-09	허가/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총량	비고
1	M071543	퍼메트린	40g/100㎖	의약외품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
성상	미황색의 투명한 유제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3. 희석방법, 적용비율, 사용방법(파리, 모기, 바퀴벌레 구제에 사용할 경우)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파리	직접분무	이 약 3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
모기	직접분무	이 약 2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
바퀴벌레	직접분무	이 약 3.2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명(한글)	1.닥터솔루션살균소독액 2.쿼트플러스액		
회사명	(주)한성바이오켐	업허가번호	0835
허가/신고일	2006-07-13	허가/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총량	비고
1	M107673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 염화알켈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5.625g/100㎖	의약외품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성상	제1법 : 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 제2법 : 빨간색의 투명한 액체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 상	희석방법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명(한글)	델타킹유제(데카메트린)		
회사명	아성제약(주)	업허가번호	0830
허가/신고일	2007-07-31	허가/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총량	비고
1	M089121	데카메트린	2.5g/100㎖	의약외품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성상	플라스틱병에 담긴 황색액체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사용한다.

나.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직접분무시	700배 희석	희석액 40㎖/㎡
	가열연막 사용시	250배 희석 (249L 등유에 본제 1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사용)	희석액 5.4㎖/㎡
파리	직접분무시	300배 희석	희석액 40㎖/㎡
	가열연막 사용시	150배 희석 (149L 등유에 본제 1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사용)	희석액 5.4㎖/㎡

다. 사용장소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명(한글)	벅클린		
회사명	(주)오송	업허가번호	928
허가/신고일	2007-07-23	허가/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총량	비고
1	M102551	에토펜프록스	5.0g/100㎖	의약외품
2	M102552	옥타클로디프로필에텔	11.0g/100㎖	의약외품

저장방법	차광한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성상	담황색~담황갈색으로 약간의 점성이 있고 아주 맑은 액체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파리 성충	직접 분무 : 100~2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2
	가열 연막 : 150배 등유에 희석	희석액 2.5mL/m^2
파리 성충	표면 잔류 분무 : 25~5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2
파리 유충 (구더기)	유충 발생장소 : 4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2L/m^2
	쓰레기 퇴비 : 600~8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4L/m^2
모기 유충 (장구벌레)	수량 1m3당 본제 10~20mL를 물에 희석	에토펜프록스 0.5~1.0ppm
바퀴벌레	표면 잔류 분무(도포) : 20~3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2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

제품명(한글)	롱다운유제(델타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싸이언스	업허가번호	0494
허가/신고일	1997-03-03	허가/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총량	비고
1	M250580	델타메트린	1.5g/100㎖	의약외품

저장방법	기밀용기, 냉암소 보관
성상	미황색의 투명한 유제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직접분무	바퀴벌레, 개미, 벼룩, 빈대	이 약 17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50mL/㎡
	파리, 모기	이 약 8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50mL/㎡
가열연막	모기	이 약 7.0L를 등유 1,000로 희석	희석액 10.7mL/㎡
가열연무	파리	이 약 7.7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1 mL/㎡
	모기	이 약 5.26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1 mL/㎡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명(한글)	롱다운플러스(델타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싸이언스	업허가번호	0494
허가/신고일	2006-06-16	허가/신고구분	허가

번호	원료코드	원료명	분량/총량	비고
1	M250580	델타메트린	2.5g/100㎖	의약외품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성상	미황색의 투명한 유제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직접분무	모기	이 약 2.6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79.3mL/㎡
	파리	이 약 2.5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79.3mL/㎡
	바퀴벌레	이 약 8.3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79.3mL/㎡
가열연막	모기	이 약 3.3mL를 등유 1L로 희석	희석액 10L/ha
	파리	이 약 4.0mL를 등유 1L로 희석	희석액 10L/ha
가열연무	모기	이 약 3.3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10L/ha
	파리	이 약 3.3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10L/ha
	바퀴벌레	이 약 5.0mL를 물 1L로 희석	희석액 10L/ha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6]

임시격리실 설치 · 운영 기준

- (설치위치) 임시격리실은 외부와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환자 이송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환기)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춘다
- (착·탈의실)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탈의를 위한 격리된 공간을 마련한다.
- (위생시설) 개인 화장실, 환자 세면대, 의료진 세면대가 설치된 1인 격리실을 사용한다.
- (위생물품)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손잡이가 없는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비누, 종이 타월, 손소독제)을 마련한다.
- (소통장치)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 등의 소통 장치를 마련한다.
- (구비물품) 소지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용 체온계, 혈압계 등 진료장비를 구비한다.
- (근무자 복장) 근무자는 N 95마스크(또는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의심환자에게도 착용시킨다.
- (근무자 임무) 근무자는 2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한다.
- (환자식사) 환자의 식사는 검역소에서 제공하되 가급적 1회용 식기를 사용한다.
- (환자퇴실 후 관리)
  · (폐기물 관리) 격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 별도분리를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독) 환자 퇴실이후에 격리실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단, 검역소 사정에 따라 별도 운영 가능

[참고 7]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 및 방법

1. 항만 검역

가. 승선 검역

1) 제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

가)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직접 들어오는 선박

나)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직접 들어오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다)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라)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마)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사)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2) 제출 방법

가) 선의가 탑승한 경우

(1) 검역감염병 증상 발생 및 발생 후 감시기간 내에 들어오는 승객 및 승무원

- 개인이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또는 선박의 장 일괄 제출

(2) (1)에 해당하지 않는 승객 및 승무원

-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생략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객 및 승무원 명부로 갈음)

(3) 선의 : [붙임 제3호 서식]에 따른 건강확인서 제출

나) 선의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승객 및 승무원 개인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거나 선박의 장이 일괄 제출

나. 전자 검역

1) 제출 대상 : 전자검역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 내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오염지역 체류·경유한 사실이 있는 승객 및 승무원
2) 제출 방법 : 개인이 건강상태 질문서(또는 [별지 제37호의2 서식]에 따른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제출
3) 행정 사항 : [붙임 제29호]에 따른 오염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에 명부 작성 및 보관

2. 공항, 육로 검역

가. 제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해당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
2)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6)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수단

나. 제출 방법 : 개인이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일괄 제출

3. 자진신고

○ 비오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사람 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실을 신고한 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 후 [붙임 제29호]에 따른 오염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에 명부 작성 및 보관

* 건강상태 질문서를 개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객 및 승무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 가능

* 건강상태 질문서의 서식은 검역감염병별 특성(증상,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 내에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참고 8]

검역조사서 작성 · 보관 방법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실시 후 [붙임 제28호]에 따른 검역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

가.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

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다.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라.「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마.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수단

*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2. 보관방법 : 철하여 검역소 내 자체보관